

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039
----------	------

2019. 12. 18  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. 9. 26. 김태수 의원
2. 회부일자 : 2019. 10. 22
3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290회 정례회 제9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2019. 12. 18. 상정·의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김태수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시장은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4조의2 신설)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 (조정래 수석전문위원)

- 이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‘민감정보’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의 ‘고유식별정보’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, 김태수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.

현 행	개 정 안
<p>〈신 설〉</p>	<p>제4조의2(민감정보의 처리)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p>
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치적 견해, 건강 등 ‘민감정보’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,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토록하고 있음.

또한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도 개인정보처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‘고유식별정보’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,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음.

○ 이를 근거로 최근 「주거기본법 시행령」 제17조1)가 개정 (2019.8.6.)되어, 시·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「주거기본법」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‘건강에 관한 정보’(민감정보)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 ‘고유식별정보’가 포함된 자료를 기존 주민등록번호에 추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.

- 이는 개인정보의 침해우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서, 궁극적으로 장애인,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라는 공익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보다 크다고 판단되어 신설된 사항<sup>2)</sup>이며, 주거실태조사의 시행을 위해 표본 가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는 불가피한 실정<sup>3)</sup>인 것으로 파악됨.

#### 1)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7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및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15조에 따른 주거비 보조에 관한 사무
2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
3. **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**
4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·운영에 관한 사무
5.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교육, 채용·배치에 관한 사무

2) 출처 - 「주거기본법 시행령」의 ‘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기준’에 관한 규제영향 분석서 (국토교통부), [붙임-4] 참고

3) 출처 - 「주거기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 (국토교통부), [붙임-3] 참고

-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와 직결된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이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한 ‘실태조사’를 실시함에 있어, 「주거기본법 시행령」을 근거로 건강 관련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4가지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.
- 이 조례에 따른 ‘실태조사’의 대상과 내용<sup>4)</sup>이 「주거기본법」상 ‘주거실태조사’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하겠으나, 이것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에서 ‘해당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아울러 이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는 내용적으로 「주거기본법」 제20조의 주거실태조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바, 조례 제4조제1항에 ‘「주거기본법」 제20조에 따른 실태조사’에 해당함을 명시함으로써 「주거기본법 시행령」에 의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겠음.

#### 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---

4) 실태조사의 내용 (조례 제4조제1항)

1.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사항
2.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
3.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V. 토론요지 : 생략

VI. 심사결과 : 수정 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VII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#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039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일자 : 2019. 12. 18  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이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를 「주거기본법」 제20조에 따른 실태조사'로 직접 명시함으로써 해당 법령의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 2. 수정 주요내용

- 이 조례에 의한 실태조사가 「주거기본법」 제20조에 의한 것으로 그 근거를 추가함(안 제4조).

##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은”을 “시장은 「주거기본법」 제20조에 의하여”로 하고,

안 제4조의2는 삭제한다.



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은”을 “시장은 「주거기본법」 제20조에 의하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<p>제4조(실태조사의 실시) ① <u>시장은</u>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4조(실태조사의 실시) ① <u>시장은 「주거기본법」 제20조에 의하여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